

2024년 제7차 시청자미디어재단 체험형인턴 채용 공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인재를 모십니다.

2024년 9월 4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

I. 채용분야·인원

○ 체험형인턴 29명

구분	직급	채용분야	주요업무 및 관련분야	근무처, 지역	계약 기간	인원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 (체험형)	시청자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 부서 행정 지원 및 정부 협약사업 운영 지원 등	재단 본사, 서울	임용일 ~ '24.12.31.	6
				부산센터, 부산		2
			광주센터, 광주	2		
			강원센터, 춘천	1		
			대전센터, 대전	1		
			인천센터, 인천	2		
			서울센터, 서울	3		
			울산센터, 울산	2		
			경기센터, 남양주	2		
			충북센터, 청주	2		
			세종센터, 세종	1		
			경남센터, 창원	2		
			대구센터, 대구	3		
합계						29명

※ 입사지원 시 근무처를 선택하여 지원(복수 지원 불가)

※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면직하며, 정규직 전환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음

II. 지원자격

○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채용 구분	직급	지원자격
공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①)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 (체험형)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 (공고마감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②) *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 연장 ○ 체험형인턴 임용 기간 동안 실제 근무가 가능한 자(③) ※ ①, ②, 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요건별 세부 내용 】

①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재단 「인사규정」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나이에 해당하는 자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③ 체험형인턴 임용 기간 동안 실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 공고된 임용일 및 근무계약일 동안 정해진 근무장소에서 소정근로가 가능한 자

Ⅲ. 고용조건

채용 구분	채용 분야	고용조건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 기간제계약직(체험형인턴) ○ (보수) 월 2,204,890원(세전) ○ (계약기간) 임용일 ~ '24.12.31.(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면직) ○ (근무시간) 주40시간 근무 ○ (근무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서울센터(서울), 부산센터(부산), 광주센터(광주), 강원센터(춘천), 대전센터(대전), 인천센터(인천), 울산센터(울산), 경기센터(남양주), 충북센터(청주), 세종센터(세종), 경남센터(창원), 대구센터(대구) ○ (기타) 재단 취업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Ⅳ. 가점항목

구분	가점대상	부여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급에 따라 만점의 5~10%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의 경우 10%)
저소득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만점의 2%
북한 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만점의 2%

구분	가점대상	부여가점
다문화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만점의 2%

- 가점항목 중복 시 높은 가점 부여, 채용전형별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여함
- 가점은 해당 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한해 적용함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와 가점 대상 내용이 다른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V. 합격자 배수

채용구분	직급	채용분야	모집단위 (근무처)	채용 인원	합격자 수	
					시역량검사	면접심사
체험형 인턴	청년 인턴 (체험형)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재단 본사	6	18	6
			부산센터	2	6	2
			광주센터	2	6	2
			강원센터	1	3	1
			대전센터	1	3	1
			인천센터	2	6	2
			서울센터	3	9	3
			울산센터	2	6	2
			경기센터	2	6	2
			충북센터	2	6	2
			세종센터	1	3	1
			경남센터	2	6	2
			대구센터	3	9	3
합계(배수)				29명	87명 (3배수)	29명 (1배수)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VI. 전형 안내

전형 단계	합격 배수	전형 방식
지원서 제출	-	양식에 따른 지원서 온라인 제출
↓		↓
AI역량검사	3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역량검사) 온라인 면접 및 문제풀이를 통해 AI가 평가, 가중치 100%
↓		↓
서류제출	-	면접 대상자 제출서류 온라인 접수 및 검토
↓		
최종면접	1배수	외부위원 포함 비대면 최종면접 시행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단, 전형 일정 및 방법(온라인 및 대면 면접 여부 등)은 재단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AI역량검사) AI역량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각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AI역량검사는 사전 통보된 방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응시

※ AI역량검사 평가요소 : AI(인공지능 기반 솔루션)를 통해 신뢰, 전략, 관계, 실행, 가치, 조직적합, 호감도 등의 성과 역량 파악

3) (면접심사) 최종점수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발

※ 표현력,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능력, 대인관계, 면접참여 태도 등의 역량요소 평가

【참고】 체험형인턴 전형 방법

구분	전형 방법
지원서 작성 및 접수	○ 채용 지원서 온라인 작성 및 접수
시역량검사 응시	○ 서류 접수를 완료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역량검사 일정 및 응시 필요정보 별도 안내 ○ 안내 받은 기한 내 지원자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시역량검사 응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평가에 응시
면접심사	○ 전형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된 일정 및 안내사항 등에 따라 온라인 화상면접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온라인 면접에 응시

*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접전형 운영시간,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VII. 전형일정

구분	일정	합격자발표	비고
채용공고	9.4.(수)~9.12.(목)	-	* 지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시역량검사	9.12.(목)~9.19.(목)	9.23.(월)	* 합격자 발표 18:00 예정
증빙서류 온라인접수	9.23.(월)~9.25.(수)		* 시역량검사 합격자에 한해 증빙 서류 온라인 제출
면접전형 (온라인 비대면)	9.25.(수)~9.27.(금)	9.30.(월)	* 대상자 별도 안내 * 합격자 발표 18:00 예정
임용일	10.7.(월)	-	

※ 상기 일정 및 전형방식 등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에게 실제 근무 시작일을 개별 통지함(기타사항 참조)

VIII. 지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4. 9. 4.(수) ~ 2024. 9. 12.(목) 15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접수처 : <https://kcmf.recruiter.co.kr>
- 문의처 : 온라인 채용시스템 내 [채용Q&A] 이용(접수기간 내)

※ 입사지원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다수 지원자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미리 지원서를 최종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IX. 기타사항

- 동 공고 내 모집 단위별 중복지원 불가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은 증빙가능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등의 오기재 및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바람
- 전형별 합격자에게 가점항목,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과 방식으로 이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 자격 및 가점 요건 등의 확인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며, 지원 자격 및 가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밝혀진 경우 재단은 합격 취소 및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대상자 별도 안내)
-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제출 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 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며,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함
-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재단은 최종 합격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함
-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회에게 제공하지 않음

- 지원자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성명,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재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팀(☎02-6900-8305)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장애 등으로 채용 시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지원부(☎02-6900-8323)로 연락
 -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 이의제기 접수처: recruit@kcmf.or.kr

붙임1

채용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합격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면접 및 임용 후 허위사항 발견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원 자격 및 경력확인용으로, 시험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제출 서류	발급 유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학사) 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증명서 ※ 인턴은 근무기간이 명시된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 • 소득금액증명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발급)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발급 가능 (중증장애인이 해당여부에 '아니오'로 표기되어 발급됨) * 기타 (중증)장애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 (前 국적 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개명자의 경우 개명사항 포함)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적증명서 (남자의 경우에 한해서 제출, 여성은 해당 없음)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증명서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취득분까지만 인정, 면허(자격증) 유효기간이 채용공고 마감일 이내에 있을 경우에만 인정 	기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기한 없음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유효기간 내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 문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다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